

	입학홍보운영위원회규정	규정번호	5-0-32
		제정일자	2014. 4. 1.
		개정일자	2026. 7. 1

제1조(명칭) 이 위원회는 경민대학교 입학홍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3조제1항에 의거하여 대학 장단기 입학홍보 운영계획 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3.1.)

1. 입학홍보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 심의
2. 대외 홍보활동의 조정 및 자문
3. 교내·외 홍보용 간행물 발간 및 기념품 제작에 관한 사항
4. 홍보대사 선발 및 운영
5. 외부 사업의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본 규정에 준하여 운영. (신설 2019.3.1.)
6. 기타 입학홍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주관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8.1.)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간사는 주관부서의 직원으로 둔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사항을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외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제 규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